

1. 개정이유

「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34505호, 2024. 5. 14. 공포, 2024. 5. 17. 시행) 및 「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(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, 2024. 5. 17. 공포, 2024. 5. 17. 시행)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에 권한 위임된 업무를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과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국립무형유산원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권한 조정(안 제13조, 제14조, 제18조)
- 나.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증 서식 정비(안 별지 제10호서식)
- 다. 전수교육 이수증 및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정비(안 별지 제14호, 제15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을 각각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“국립무형유산원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뒤쪽 제3호 중 “국립무형유산원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 중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을 각각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5호서식 신청인 중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(국립무형유산원)”을 “(국가유산청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가무형유산 조사원증

(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

국가유산청

국가무형유산 조사원증

국가유산청장

직인

1.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.
2.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(수신처: **국가유산청**).

제 호

이 수 증

국가무형유산 ○○○ (이수 기능·예능:)

성 명:

생 년 월 일:

전수교육 주체:

발 급 일:

위 사람은 위의 국가무형유산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(예능) 수준이
탁월하므로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라
위와 같이 이수증을 발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유산청장

직인

이수증 재발급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국가무형유산 명칭		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(전화번호:)		
재발급 신청사유	[] 멸실 [] 훼손 ※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.		
멸실·훼손의 사유			
그 밖의 사항			

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정기조사의 결과 기록) <u>국립무형유산원</u>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,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제13조(정기조사의 결과 기록) <u>국가유산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4조(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) ① (생략) ② <u>국립무형유산원</u> 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	제14조(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국가유산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8조(전수교육 이수증) ① (생략)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<u>국립무형유산원</u>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<u>국립무형유산원</u> 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	제18조(전수교육 이수증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유산청장</u> ----- -----. ③ <u>국가유산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